

1. 개정이유

우수한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의 거점병원 참여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
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필수 의사인력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기준 중 필수 의사인력(소아 정신건강의학과
전문의 1명 이상) 기준(안 제16조제3항제1호)
-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
전문의도 가능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전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제1호 중 괄호 안의 “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”을 “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. 다만,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가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) ① ~ ② (생략)	제16조(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발달장애인을 진료하는 전문의 3명 이상(<u>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</u>) 보유 여부	1. ----- -----(<u>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. 다만, 소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도 가능</u>) -----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생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